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5. 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사유

- 지방공무원법 개정(법률 제4613호)으로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게도 위임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소속공무원의 인적요소를 가장잘아는 출장소장에게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하여 인사의 능률성제고 및 신속성을 기하도록 함
-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준칙통보('95. 7. 4)

□ 주요골자

-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

□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총무과 소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